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82

발의연월일: 2025. 6. 9.

발 의 자:정춘생·백선희·황운하

박은정 · 김준형 · 신장식

이해민 · 김재원 · 서왕진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법률 제 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이 청구되어
재판 또는 심사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상의 내용) ① · ② (생	제5조(보상의 내용) ① · 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③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	
한 보상금 외에 <u>3천만원</u> 이내	<u>7천만원</u>
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	
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	
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	
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	
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